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01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이개호・정진욱・황명선
조계원・김원이・윤준병
강민국・박지원・김상훈
서미화・문금주・이학영
박희승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학대 행위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을 제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행위는 그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요양기관 운영자의 주의 감독 및 대처 방식 등이 다양하기에 처분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중증질환을 앓는 수급자를 강제 전원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미한 학대 사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신 「사회복지사업법」을 원용하여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편법을 사용하며, 기관 운영자들도 이분법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제37조제1항제6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제36조의3 각 호를 고려할 때 시정 조치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관리 방법의 개선, 종사자 교육의 강화, 인력 배치 또는 업무수행 체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처분의 양정 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6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2. 위반행위의 고의성 여부 및 행위의 반복성
3. 장기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평상시 교육·감독 조치

4. 위반행위 발생 후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5. 해당 처분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불이익 정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6조의3의 기준에 따라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제6호 각 목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2(시정명령) (생 략)	제36조의2(시정명령)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제37조제1항제6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제36조의3 각 호를 고려할 때 시정 조치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관리 방법의 개선, 종사자 교육의 강화, 인력 배치 또는 업무 수행 체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3(처분의 양정 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6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2. 위반행위의 고의성 여부 및 행위의 반복성 3. 장기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평상시 교육·감독 조치 4. 위반행위 발생 후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5. 해당 처분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불이익 정도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 ---------- ---------- ---------- ---------- ---------- ----------. 이 경우 제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6조의3의 기준에 따라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